"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"

한 국 건 설 자 원 협 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참 조
제 목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수렴

1. 환경부에서는 습식 선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 기한('20.12.31 → '21.12.31)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을 입법예고(환경부공고제2020-936호, '20.11.9)하였습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 주요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2월 17일(목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5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참고로 협회에서는 규제 도입과정에서의 입법예고 미 실시 등 행정절차법상 문제와 업계의 준비기간 부족, 지자체의 검토 지연 등으로 인해 '20년 연내 신고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 유예기간 마련 등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, 그 결과 동 개정령(안)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주요 내용

○ **습식선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기한 1년 연장(안 별표3 제2호다목)**
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개정('19.5.2)으로 '20.1.1일부터 대기오염배출시설로 분류되는 습식선별시설 등에 대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기한을 1년 연장 (현행 '20.12.31 → 개정안 '21.12.31)

□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	개정안	수정안	사 유

붙임 :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(협회 홈페이지 참조) 1부. 끝.

한 국 건 설 자 원 협 회 회 장

전결

팀 장 **최진용** 부 장 **강한서** 본부장 **이원표** 사무총장 **안연광** 회 장

협조자

시 행 정책기획 - 553호 (2020.11.9) 접수

우 067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(일동제약빌딩 3층) / www.koras.org

전화 02-3476-7787 전송 02-3476-8464 /koras@koras.org / 공개